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5. 31 선고 2019가단332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소송대리인 C

피고D

변론 종결2019. 5. 17.

판결 선고2019. 5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단층
철근콘크리트 기둥 및 지붕 건축물(약 180m²)을 철거하고,

나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취하하였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승우

별지